

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

농림부

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특례규정인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대통령령 제20630호, '08.2.22)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축·수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세부 내용

1. 관련 법령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
-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6조 ~ 제13조, 별표5, 별표6
-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」 제5조, 제6조

2.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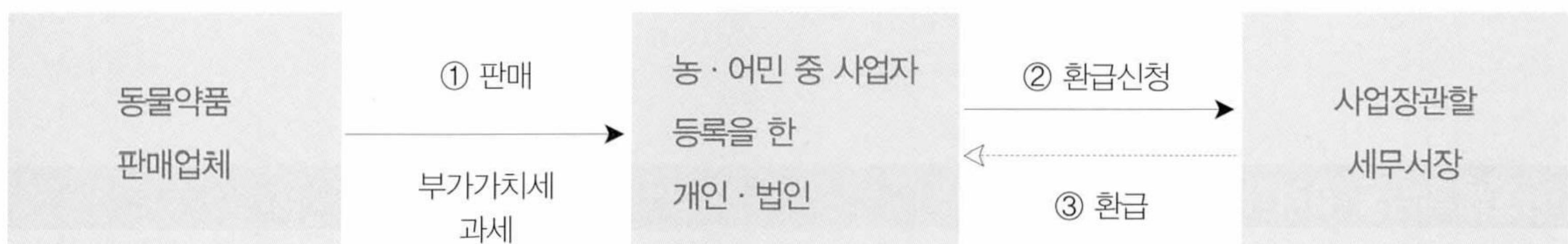
1)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



- ①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
- ②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·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까지 환급대행신청(세금계산서, 농·어민확인서 첨부)
- ③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(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, 환급신청명세서 첨부)
- ④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환급
- ⑤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·어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소정의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.

2) 농·어민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

-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
 -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·어민에 해당하는 자중 「부가가치세법」·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


- ①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세금계산서에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여 표시
- ②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·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(부가가치제20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, 경작확인서 또는 조인서 첨부)
- ③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 환급

3.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점

-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받는 동물용의약품부터 적용

